

부산교통공단에대한부산직할시사하구세과세면제조례중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2. 12. 24.

총무사회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년 12월 10일 사하구청장
- 나. 회부일자 : 1992년 12월 10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1회 정기회 제3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
(’92. 12. 2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성 종 무)

가. 제안이유

부산교통권역내 대중 교통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고 운영의 합리화로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교통공단에 대하여 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면제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부칙의 시행기간 1992년 12월 31일을 1994년 12월 31일 연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심 완 택)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교통공단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구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줌으로써 공익사업에 이바지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생활의 편익에 더욱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습

5. 토론요지 : 없 습

6. 심사결과 : 원안 의결